

# 서울생활문화센터 신도림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

의안번호	187
------	-----

2022. 9. 28.  
문화체육관광위원회

## I. 심사경과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22년 8월 29일, 서울특별시장
- 나. 회부일자 : 2022년 9월 2일
- 다. 상정결과 : 【서울특별시의회 제314회 임시회】
  - 제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(2022.9.21.)상정,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 및 답변, 의결(원안가결)

## II. 제안설명의 요지(문화본부장 주용태)

### 1. 제안이유

- 가. 서울생활문화센터 신도림은 일상 속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조성된 서남권 거점형 서울생활문화센터로 민간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음.
- 나. 기존 위탁기관의 위탁기간이 2022.12.31.자로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을 추진하고자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의3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가. 위탁사무명 : 서울생활문화센터 신도림 운영

나. 시설개요

- 시설명 : 서울생활문화센터 신도림
- 소재지 : 구로구 새말로 117-21 일대(신도림역 3번 출구 지하1층)
- 시설규모 : 752.9㎡(다목적홀A/B, 음악실, 미술실, 무용실2, 세미나실)
- 개관일 : 2012.6.1.

다. 위탁기간 : 3년(2023.1.1.~2025.12.31.)

라. 민간위탁금(안) : 429백만원(2023년 기준)

마. 위탁사무

- 서울생활문화센터 신도림 공간 운영 및 시설물 유지·관리에 관한 사항
- 일상 속 생활문화 네트워크 구축
- 생활문화 진흥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·기획·교육·보급·홍보 및 운영에 관한 사항
- 기타 서울생활문화센터 신도림 운영과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

바. 수탁기관 선정방법 : 공개모집

사.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

- 서울생활문화센터 신도림은 신도림역 3번 출구 지하에 위치하여 유동 인구가 많아 시민들의 접근성이 매우 좋은 공간으로,
- 시민들의 생활문화 향유 기회 확대하고 생활문화 매개자 양성을 통한 시민과 지역 중심의 네트워크 구축, 다양한 생활문화 전시·공연 프로그램 기획 등 추진 중임
- 생활문화 동아리 활동 지원, 생활문화 향유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시설 운영 등을 위하여 문화콘텐츠에 대한 전문지식 및 인적·물적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역량 있는

민간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
아. 심의결과 : 적정

### 3. 참고사항

#### 가. 관계법령

- 「지역문화진흥법」 제8조(생활문화시설의 확충 및 지원)
- 「서울특별시 생활문화진흥에 관한 조례」 제8조(센터 설치·운영 등)
-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(민간위탁 사무의 기준), 제6조(민간위탁 사무내용)

나. 예산조치 : 2023년 예산 편성 필요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### Ⅲ. 검토보고 요지(수석전문위원 주우철)

#### 가. 동의안의 개요

- 동의안은 서울생활문화센터 신도림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만료일(2022.12.31.)이 도래됨에 따라 재위탁하기에 앞서 서울시의회의 동의<sup>1)</sup>를 받고자 제출되었음.

---

1)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의3(의회동의 및 보고)  
① 시장은 제4조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와 위탁사무의 중요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, 제2조제4호에 따른 재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회(이하 "의회"라 한다)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

## 나. 서울생활문화센터 현황

- 거점형 생활문화지원센터는 민선 7기 시장 공약사항으로 2016년 8월 ‘생활문화도시, 서울 기본계획’ 수립에 따라 서울생활문화센터 신도림, 체부, 낙원, 서교가 개관하여 운영 중임.

### < 거점형 생활문화센터 현황 >

생활문화센터	개관일	운영개요	권역
① 서울생활문화센터 신도림	'11. 6.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신도림 역사 내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조성</li> <li>• 미술, 전시 중심</li> <li>• 전시홀 2개, 무용실, 음악실, 미술실</li> </ul>	서남권
② 서울생활문화센터 체부	'18. 3.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체부동 성결교회를 매입하여 조성</li> <li>• 생활오케스트라 중심</li> <li>• 체부홀, 마을카페, 연습실, 강의실</li> </ul>	도심권
③ 서울생활문화센터 낙원	'20.10.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낙원상가 1층 주차공간에 재생사업으로 조성</li> <li>• 악기강습, 악기나눔 중심</li> <li>• 음악연습실, 녹음스튜디오, 수리수리공작소, 역사갤러리, 악기보관실</li> </ul>	
④ 서울생활문화센터 서교	'20.11.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역세권 청년임대주택 내 지하공간을 기부채납 받아 조성</li> <li>• 청년, 공연 중심</li> <li>• 공연장(160석), 음악연습실, 무용연습실</li> </ul>	서북권

- 거점형 생활문화센터는 시민 누구나 일상적으로 문화를 접할 수 있도록 권역별(4개 자치구)내 생활문화 인력·자원·활동·정보 등을 종합 지원하는 멀티 플랫폼의 역할을 하고자 함.
- 이들 센터는 일상 속에서 악기 등 생활문화 자원을 공유하는 한편, 생활문화 연습공간에서 발표·교류를 통한 네트워크 구축·정보 공유 등 주민참여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것으로 평가됨.

- 이 중 ‘신도림’은 미술·전시, ‘체부’는 생활오케스트라, ‘낙원’은 악기 강습, 악기 나눔, ‘서교’는 청년, 공연 중심으로 각각 특화되어 운영되고 있음.

#### 다. 서울생활문화센터 신도림 운영 현황

- 서울생활문화센터 신도림(이하 “신도림센터”)은 미술·전시 중심의 생활문화 플랫폼으로 시민 누구나 일상적으로 문화를 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2012년 6월부터 개관·운영되고 있음.

#### < 생활문화센터 신도림 민간위탁 현황 >

- ▶ 시 설 명 : 서울생활문화센터 신도림
- ▶ 위 치 : 구로구 새말로 117-21 일대(신도림역 3번 출구 지하1층)
- ▶ 시설규모 : 752.9㎡
- ▶ 시설용도 : 생활문화지원센터
- ▶ 현 수탁기관 : 구로문화재단
- ▶ 2023년 소요예산(안) : 429백만원
- ▶ 운영인력 : 4명

- 신도림센터의 수탁기관은 구로문화재단이 최초 위탁(2011.8월~2013.12월) 이후, 2019.9.6. 시의회 동의를 받아 재위탁(2017년 1월부터 현재 까지)되어 9년째 운영하고 있음.
- 민간위탁금은 2억 9천8백만원으로 전년 대비 37%가 감액되었으나 2021년 노후시설 개보수 비가 추가되면서 증액(1억 5천만원)된 것을 고려하면 민간위탁금은 유사한 규모로 지원되고 있음.

### < 최근 3년간 신도림센터 민간위탁금 >

(단위 : 천원)

연도	2020	2021	2022
민간위탁금	277,579	450,611	298,084

- 다만, 인건비와 관련하여 현재 근무 인력 4명이 공간관리, 프로그램 운영, 홍보 등을 진행함에 따라 업무에 대한 집중도와 효율성이 저하됨에 따른 인력 증원요청이 있었음.
- 「신도림 생활문화지원센터 위·수탁 협약서」 제8조제5항에 따라 정규직 비율을 25% 이상 유지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나 근무 인원 모두 비정규직인 점과 낙원, 서교, 체부 등 다른 생활문화센터보다 공간 규모나 사무의 범위가 작지 않음에도 근무 인력이 부족함.

### < 생활문화센터 공간별 근무인력 현황 >

구분	낙원	서교	신도림	체부
공간 (넓이)	11개 공간(큐브) (580㎡)	8개 공간(공연장포함) (2,719.57㎡,)	7개 공간 (752.9㎡)	2개 공간 (467㎡)
근무인력	6명	7명	4명	5명

- 신도림센터는 유동 인구가 많아 시민들의 접근성이 좋은 공간인 신도림역 3번 출구 지하에 위치하고 있으며, 공간 대여, 로고송 제작, 전시회, 시민참여 프로그램, 지역협력 사업, 홍보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음.

### < 서울생활문화센터 신도림 프로그램 운영 실적 >

구분	프로그램 수	프로그램 운영 횟수	참여자 수	관람객 수
2019	19	76회	1,886명	20,849명
2020	15	68회	619명	10,887명
2021	15	167회	1,067명	18,870명

- 신도림센터의 운영실적을 살펴보면, 프로그램 수, 참여자 수, 관람객 수가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수준으로 회복되고 있으나, 유동 인구가 많은 공간에 위치하여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장점을 발휘하지는 못한 것으로 분석됨.
- 또한, 미술·전시 중심의 생활문화 플랫폼으로 특화되어 있다는 점에서 ‘낙원센터’가 보다 다양한 전시가 이루어지므로 ‘신도림센터’도 이처럼 다양한 전시 프로그램 개발에 노력할 필요성이 있음.

### < 서울생활문화센터별 전시 현황 >

센터명	전시 프로그램
신도림	·모두의 전람회 전시 ·시민작가 참여 전시
체부	·체부UP 展
낙원	·낙원역사갤러리 특별전시 ·시민공유갤러리 ·문화재단과 함께하는 유명화가 소장전 ·시민기획단 음반제작 특별전
서교	없음

- 신도림센터의 공간 운영을 살펴보면, 다목적홀은 전시, 행사, 공연을 할 수 있는 공간이며, 연습실은 음악, 미술, 무용, 연극 등의 동아리 모임에 적합한 공간으로 각각 가동률이 평균 72%, 53%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.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.

## < 서울생활문화센터 신도림 공간 운영 실적 >

(2022.6월말 기준)

구분	다목적홀(가동률)	연습실(가동률)	대관동아리 수	이용인원
2019	77%	65%	300개	17,739명
2020	80%	46%	290개	20,418명
2021	86%	52%	450개	37,157명
2022	45%	50%	284개	23,606명

### 라. 민간위탁 타당성

- 신도림센터의 위탁기관은 ▶아마추어 예술인들의 창작활동 활성화를 위한 공간 제공, ▶시민들의 문화 감수성 및 예술성취도 향상을 위한 문화행사 기획 및 운영, ▶지역사회 및 문화 예술 네트워크와 적극 소통하며 활동 영역 확대, ▶문화행사 추진 시 다양한 예술 단체와 협력 기획 진행 등의 사업을 수행함.
- 따라서 문화콘텐츠에 대한 전문지식 및 인적·물적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운영 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음.
- 신도림센터는 민간위탁금 5억원 이하의 사무로 종합성과평가 대상에 해당되지 않지만 연 1회 문화본부의 지도·점검을 받았으며 2020년 6건, 2021년 3건, 2022년 6월 기준 2건의 지적사항이 발생했음.
- 위탁자인 구로문화재단은 신도림센터를 약 9년 동안 운영하면서 ▶전기요금 체납 및 연체료발생, ▶수입금 통장 입출금 내역 정리, ▶이용자 건의함 비치, ▶환경정리, ▶물품정리와 같은 시설 운영의 기본적인 부분에서 지적받았음.

**< 서울생활문화센터 신도림 지도·점검 결과 >**

구분		지적사항(조치완료 여부)	지적(완료)건수 /이행률
'20년	통합회계감사 ('21년03월)	'20년에 대한 회계감사 지적사항 없음	-
	서울시 지도·점검 ('20.11.20.)	- 전기요금 체납 및 연체료 발생(완료) - 수입금 통장 입출금 내역 정리(완료) - 시설내부 보수공사 市 인건비 노임단가 미적용 및 공사 전후 사진 미비(완료) - 이용자 건의함 비치 필요(완료) - 세미나실 및 음악실 환경정리(완료) - 내용연수 초과 물품 정리(완료)	6건(6건)/ 100%
'21년	통합회계감사 ('22.03월)	'21년에 대한 회계감사 지적사항 없음	
	서울시 지도·점검 ('21.12.09.)	- 전기요금 체납 및 연체료 발생(완료) - 센터 사무실에 센터 업무 담당 직원이 아닌 수탁사 직원 근무 (완료) - 구로문화재단 운영규정을 준용하고 있으나 신도림 센터의 정보 현행화 필요(완료)	3건(3건)/ 100%
'22년	통합회계감사	'23년에 실시	-
	서울시 지도·점검 ('22.06.16.)	- 이용자 위원회 미구성(조치중) - '21년 '신도림 센터 개보수 공사' 결과보고서 미제출(조치중)	2건/진행중

- 이는 센터가 개관한 이후 10여 년이 지난 시점에서 운영 역량과 생활문화의 관점 확대 및 지역 내 자원 네트워크 거점으로서 과연 그 중심 역할을 제대로 운영하고 있는지 의문임.
  
- 2022년 서울시 민간위탁 성과보고서에는 신도림센터의 개선(발전) 방안으로 ▶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시민들 삶 속에서 지속 가능한 생활문화 참여와 동아리 네트워크 유지 및 성장 프로그램 활성화, ▶K-POP, 유튜브 제작자 등 분야확장으로 MZ세대를 포함한 생활 예술 활성화, ▶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생활문화 네트워크 성장을 통한 공동체 형성에 대한 방안 마련 요구가 있었음.

- 따라서 신도림센터의 장기적인 운영 방향 재설정과 더불어 거점형 생활문화센터의 정체성과 역할에 대한 재정립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.

IV. 질의 및 답변요지 : 「생략」

V. 심사결과 : 원안가결(재적위원 9명, 참석위원 8명, 참석위원 전원찬성)

VI. 소수의견 요지 : 「없음」

VII. 기타 필요한 사항 : 「없음」

# 서울생활문화센터 신도림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

의안 번호	187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22년 8월 29일  
제출자 : 서울특별시

## 1. 제안이유

- 가. 서울생활문화센터 신도림은 일상 속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조성된 서남권 거점형 서울생활문화센터로 민간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음
- 나. 기존 수탁기관의 위탁기간이 2022. 12. 31.자로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을 추진하고자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의3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

## 2. 주요내용

- 가. 위탁사무명: 서울생활문화센터 신도림 운영
- 나. 시설개요
  - 시설명: 서울생활문화센터 신도림
  - 소재지: 구로구 새말로 117-21 일대(신도림역 3번 출구 지하1층)
  - 시설규모: 752.9 $m^2$ (다목적홀A/B, 음악실, 미술실, 무용실2, 세마나실)
  - 개관일: 2012. 6. 1.
- 다. 위탁기간: 3년(2023. 1. 1. ~ 2025. 12. 31.)
- 라. 민간위탁금(안): 429백만원 (2023년 기준)
- 마. 위탁사무
  - 서울생활문화센터 신도림 공간 운영 및 시설물 유지·관리에 관한 사항
  - 일상 속 생활문화 네트워크 구축

- 생활문화 진흥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·기획·교육·보급·홍보 및 운영에 관한 사항

- 기타 서울생활문화센터 신도림 운영과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

바. 수탁기관 선정방법: 공개모집

사.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

- 서울생활문화센터 신도림은 신도림역 3번 출구 지하에 위치하여 유동 인구가 많아 시민들의 접근성이 매우 좋은 공간으로,

- 시민들의 생활문화 향유 기회 확대하고 생활문화 매개자 양성을 통한 시민과 지역 중심의 네트워크 구축, 다양한 생활문화 전시·공연 프로그램 기획 등 추진 중임

- 생활문화 동아리 활동 지원, 생활문화 향유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시설 운영 등을 위하여 문화콘텐츠에 대한 전문지식 및 인적·물적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역량 있는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

아. 심의결과: 적정

#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- 「지역문화진흥법」 제8조(생활문화시설의 확충 및 지원)

- 「서울특별시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」 제8조(센터 설치·운영 등)

-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(민간위탁 사무의 기준), 제6조(민간위탁 사무내용)

나. 예산조치

- 2023년 예산 편성 필요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※ 작성자 : 문화정책과 시민문화팀 유영민 (☎ 2133-2536)

**[지역문화진흥법]****제8조(생활문화시설의 확충 및 지원)**

-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활문화시설의 확충에 필요한 지원과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
-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활문화시설의 건립·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-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유휴 공간을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문화시설로 용도 변경하여 활용할 수 있다.
-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생활문화시설을 설립·운영하려는 자가 제3항에 따른 유휴 공간을 사용할 것을 신청하면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.
- ⑤ 지방자치단체는 생활문화시설의 확충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.

**[서울특별시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]****제8조(센터 설치·운영 등)**

- ① 시장은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생활문화지원 센터(이하 "센터"라 한다)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-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  1. 문화향유 및 체험활동, 전시, 공연 등을 위한 문화 공간 조성 및 운영
  2. 생활문화단체 및 동아리 등의 자율적인 활동 환경 조성을 위한 연합회 구성 및 운영 지원
  3. 생활문화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하여 강사 및 소품·장비 등의 지원
  4. 지역사회 문화예술 발전에 공헌하는 사업
  5. 그 밖에 생활문화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**[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]****제6조(민간위탁 사무내용)**

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3. 문화·관광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